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
------	-----

제출년월일 : 2002. 11. 28.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농업기반공사의 명칭변경과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추가 및 신설하여 전문개정함으로써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 주요골자

- 가. 점용료의 감면 사항을 별표로함(안 제3조)
- 나. 부담금 부과대상자등의 조항을 신설(안 제8조)
- 다. 부담금 부과액의 결정등의 조항을 신설(안 제9조)
- 라. 부담금 부과대상토지등의 가액조사의 조항을 신설(안 제10조)
- 마. 부담금 부과기준의 조항을 신설(안 제11조)
- 바. 부담금 감면의 조항을 신설(안 제12조)
- 사. 납입통지의 조항을 신설(안 제13조)
- 아. 분할납입의 조항을 신설(안 제14조)
- 자. 강제징수의 조항을 신설(안 제15조)
- 차. 허가수수료의 징수의 조항을 신설(안 제16조)
- 카. 이의신청의 조항을 신설(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 입법예고 : 결과 의견 없음

4. 분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장수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장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장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원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 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하는 소하천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허가기간중에 사업이 완료한 경우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②제3조 별표 2의제9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 부과대상자 등) 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공고(이하 “공고”라 한다)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의 신설·개축 및 보수

2. 소하천공작물의 신설·개축·변경·제거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 없이 당해 토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공사완공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있어 토지등의 시가가 공고 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9조(부담금 부과액의 결정 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다.

제10조(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등의 가액조사) 군수는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등의 가액 및 공사준공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제11조(부담금 부과기준 등) 부담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사후 1년6월이내에 부과한다.

제12조(부담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면제
2.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감면
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에는 면제

제13조(납입통지) 군수는 부담금을 결정, 부과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분할납입) 부담금액이 과다하여 일시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는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분할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담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한다.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7조(이의신청) 점용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광업(골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 모래, 자갈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 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연액 m^3 / sec 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m^3 - 0.5m^3 / sec$ 까지 연액 10,000원 $0.5m^3 / 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	○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나목의 1/3 ※ 월 10,000m ³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 나목의 1/4 ※ 월 10,000m ³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	가. 군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관내 골재생산업체등 2개 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조정을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탈의장(매장포함)	○ 토지가격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 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20/100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제3조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업기반공사가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기타 농업의 목적으로 하는 허가	100 %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 %
3. 재해로 인한 응급복구공사 및 수해복구공사인 경우	100 %
4. 주민 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100 %
5.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 %
6. 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 %
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 %
8.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 경우	100 %
9.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 %

[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25/100}】

[별표 4]

허가수수료 요율표(제16조관련)

구 분	수 수 료 액	허 가 기 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 허가,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 공사수행 능력 ·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이상 점, 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1/1000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	점용료의 1/1000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발조합이 받는 허가	없 음	